##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4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 : 송옥주 · 한정애 · 유동수

임종성 • 박용진 • 정춘숙

박 정・김영주・박찬대

아수잔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어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 법률 제 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별표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중 "대통령령으로"를 "별표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축산업종의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산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통합관리 대상 업종(제6조제1항 관련)

#### 통합관리 대상 업종

-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화력 발전업(35113)
  - 나. 기타 발전업(35119)
-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합성고무 제조업(20301)
  -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 6. 1차 철강 제조업(241)
-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 나.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 나.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농약 제조업(20412)
  - 나.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 다.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 라.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 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 바. 화장품 제조업(20433)
- 사.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 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 자.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차.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펄프 제조업(1711)
  -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 마.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 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 다.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 라.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17. 알콜음료 제조업(111)
-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20. 반도체 제조업(261)
-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22. 축산업(01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	제6조(통합허가) ①
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u>대통</u>	
<u>령령으로</u> 정하는 업종에 속하	<u>로</u>
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	
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	
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u>&lt;</u> 후단 삭제>
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	
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	
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	
<u>할 수 있다.</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u>대통령령으로</u>	⑤ <u>별표로</u>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 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 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⑥ (생 략)

<u>.</u>
⑥ (현행과 같음)